

성범죄자와 일반범죄자의 보호관찰 경고장 관련 요인 비교

조 윤 오*

〈요 약〉

2010년 이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범죄행동 패턴 및 인구사회학적 특징, 그리고 보호관찰 취소 요인 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형이 종료된 성범죄자의 공식 판결문 및 보호관찰기록을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경고장 발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성범죄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요인이 일반범죄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두 모델을 비교·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범죄자 집단에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경고장 발송 가능성이 과거 전과횟수에 영향을 받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성범죄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혼인관계, 직장유형)이나 가해자-피해자 관계, 보호관찰 부가처분 등의 관련 변인이 준수사항 위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로지 성범죄자의 전과횟수만 경고장 발송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반범죄자 집단에서는 성범죄자 모델과 달리 혼인상태나 무직 상황, 가해자-피해자 낯선 사람 관계 여부, 폭력행동 여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가처분 여부가 경고장 발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 분석 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본다.

주제어 : 보호관찰, 경고장, 성범죄자, 일반범죄자, 준수사항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목 차

- | |
|---|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IV. 결 론 |
|---|

I. 서 론

성범죄자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신상정보공개, 성충동약물치료, 위치추적 전자감시, 스마트 보안장비와 같은 새로운 지역사회 제재수단을 만들어냈다(김지선, 박지선, 최수형, 2009; 김동제, 2007). 가장 흉악하고 위험한 범죄자이기에 국가가 재범 충동을 억제시키기 위해 가능한 많은 감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믿게 된 것이다(Sample & Kadleck, 2008; 신상화, 김지호, 2014).

이러한 가정에서는 성범죄자가 가장 위험한 범죄자이며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책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이러한 통념은 서구의 연구 결과에서 항상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성범죄자가 절도와 같은 다른 일반범죄보다 낮은 재범률을 보이기도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Furby, Weinrott, & Blackshaw, 1989; Tewksbury, Jennings, & Zgoba, 2012; Zimring, Piquero, & Jennings, 2007; Zimring, Jennings, Piquero, & Hays,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경고장 발부라는 요인을 기초로 성범죄자가 어느 정도로 재범가능성이 높은지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성범죄자가 어떤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 재범을 저지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재범은 실제 동종이나 이종 재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정의한다.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 자체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의미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로 인해 범죄자의 집행유예나 보호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준수사항 위반이 하나의 재범 지표가 될 수 있다.

범죄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거지에 상주하고 불량교우와의 접촉을 차단하며 피해자 주변에 맴돌지 않으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순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준수사항을 위반으로 보호관찰관에 의해 경고장을 받는 것이 무조건 집행유예 취소로 연결되지 않아도 일종의 재범 발생의 우려를 나타내는 강력한 전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가 지역사회 교정 기간을 어떻게 종료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보호관찰 실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변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는데 연구 의의를 둔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 본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연령, 직장, 혼인상태 등) 자체가 위험한 것인지, 혹은 범죄행동 수법에서 나타난 행동 상의 특정 요인이 위험한 것인지, 아니면 성범죄자가 보호관찰기간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되는 원인이 다른 집행 관련 외부 상황에 있는 것인지를 실제 성범죄자 기록을 검토하여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자료는 2013년 일 년 동안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종료한 성범죄자 144명과 같은 기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보호관찰을 종료한 일반 범죄자 1,460명의 보호관찰 기록을 바탕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교정 성공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경고장 발송 여부를 활용하여 성범죄자 집단과 일반범죄자 집단 집단을 각각 독자적으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보호관찰의 성패를 결정짓기 위해 어쩌면 중단연구를 통한 실질적인 종료 이후의 “재범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재범이라는 것이 재범(recidivism)을 정의하는 방식이나 범위, 그리고 재범 기간 설정 면에서 연구 결과마다 차이가 큰 차이가 있다(Catalano, 2006; Sample & Bray, 2006; Furby, Weinrott, & Blackshaw, 1989).

본 연구는 이런 차원에서 먼저 보호관찰기록 카드를 바탕으로 회고적인 방식에 의거하여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준수사항 여부를 가지고 성범죄자의 지역사회 교정 성공 여부를 판단해 보고자 한다. 성범죄자가 출소 후 혹은 재판을 받아 보호관찰소에 넘겨진 후 진정으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사후 재범발생 여부라는 추적연구로도 가능하겠지만, 보호

관찰 기간 동안의 일상행동이나 준수사항 이행 여부로도 확인이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성범죄자 집단과 일반 범죄자 집단을 비교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경고장(warning tickets) 발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도 특정 범죄학 이론을 검증하기 보다는 성범죄자의 지역사회 교정 실패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독립변수들을 설정하고, 우리나라 성범죄자의 특징 및 보호관찰 상황을 참고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만들도록 한다. 이하 이론적 배경에서 우리나라 보호관찰 성범죄자의 상황 및 관련 연구들을 검토해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성범죄자 보호관찰 현황 및 특징

2013년 법무부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범죄백서를 보면, 보호관찰에서 2008년 성범죄자는 2,705명이었으나, 그 수치가 매년 증가하여 2013년 4,05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자 해당비율도 2.7%에서 4.8%로 증가하였다. 물론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비율에서 5% 미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일반 폭력사범(23.9%)이나 절도사범(15.5%)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연도 별 증가비율로 따지면 일반 폭력사범이 3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절도사범이 26%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반해 성폭력사범 증가비율은 무려 77.8%에 이른다고 하겠다.

〈표 1〉 보호관찰대상자 연도별 변화

	2008	2009	2010	2011	2012
폭력사범	17,353	20,039	18,896	17,179	20,333
절도사범	12,391	15,948	17,037	15,351	13,189
성폭력사범	2,705	3,091	3,232	4,168	4,053
강력사범	3,091	3,784	3,111	2,790	2,430
마약사범	1,754	1,578	2,077	1,960	1,821
교통사범	20,479	21,298	19,690	16,843	16,536
사기/횡령사범	6,819	8,597	8,840	8,530	7,841

	2008	2009	2010	2011	2012
풍속사범	26,010	44,864	18,641	12,028	7,531
경제사범	1,690	1,889	1,704	1,618	1,441
기타	8,162	10,137	10,427	10,058	10,028
합계	100,454	131,224	103,665	90,525	85,163

※ 범죄백서(2013) 中

다음으로 <표 2>의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살펴봄으로써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 및 사회복귀 성공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호관찰대상자 평균 재범률을 보면, 2010년에 7.2%였던 것이 2012년에 7.9%로 증가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범무연수원, 2013). 이 중 소년 성폭력사범만 따로 구분하여 성폭력 관련법 재범률을 보면, 2010년 3.6%에서 2.4%(2012년)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소년범의 형법 재범률은 9.5%에서 10.5%로 증가하였다.

<표 2>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추이

	근거법률	처분명	2010년(%)	2011년(%)	2012년(%)
소년범	형법	소계	9.5	13.6	10.5
		선고유예	-	-	-
		집행유예	9.7	14.0	10.7
		가석방	2.8	2.3	5.9
	소년법	소계	11.4	12.2	12.9
		단기보호관찰	9.4	9.9	10.9
		장기보호관찰	13.5	14.6	15.1
		임시퇴원	16.2	15.5	16.1
	성폭력법	소계	3.6	1.1	2.4
		선고유예	-	-	-
		집행유예	3.6	1.1	2.4
	가정폭력법	보호처분	-	-	16.7

※ 범죄백서(2013) 中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 재범률을 보면(표 3 참고), 성폭력법 위반 재범률이 2010년

에 1.5%였으나, 2012년에 3.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관련법도 2010년 1.7%였으나, 2012년에 2.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추이

	근거법률	처분명	2010년(%)	2011년(%)	2012년(%)
성인	성폭력법	소계	1.5	1.8	3.2
		선고유예	-	-	-
		집행유예	1.5	1.8	3.2
		가석방			
	성매매법	소계	1.7	1.5	2.1
		보호처분	0.2	-	1.5
		집행유예	3.1	2.1	2.4
	선도위탁	소계	1.6	0.8	0.8
		1급	4.3	1.0	-
		2급	1.3	0.8	0.9
가정폭력법	보호처분	1.5	1.4	1.3	

※ 범죄백서(2013) 中

2.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실패 관련 요인 선행연구

보호관찰은 지역사회 교정의 대표적인 범죄자 재범억제 및 지도·감독 수단이다. 일정기간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가정, 사회, 혹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범죄자는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법무연수원, 2013).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실패와 관련하여 먼저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상대적으로 성범죄자가 보호관찰 실패 차원에서 일반범죄자보다 항상 더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무조건 높은 재범률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Tewksbury, Jennings, & Zgoba, 2012).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일반범죄자보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더 낮다는 반대의 연구 결과도 있다(Furby, Weinrott, & Blackshaw, 1989).

이에 대해 성범죄의 경우 재산범죄보다 피해자의 신고기피, 경찰 사건 증거확보 한계, 목격자 확보 미비 등의 연구 측정 및 분석 방법의 오류가 많아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비판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연구 결과 면에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자 재범률보다 항상 더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Catalano, 2006). 실제, 5년 동안의 종단 추적 연구를 실시한 Sample과 Bray(2006)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절도범죄자의 경우 5년 동안 전체의 38.8%가 동종 전과 재범을 저지른 반면, 성범죄자는 7% 미만만 동종 전과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과를 모두 고려한 경우에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다른 전체 일반 범죄자의 재범 평균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ample & Bray, 2003).

그렇다면, 결국 성범죄자의 위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성범죄자 전체의 재범률보다도 특이한 행동패턴을 갖고 있는 특정 성범죄 집단이 다른 성범죄자보다 더 위험하다고 상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김지영, 박지선, 박현호, 2009; Tewksbury, Jennings, & Zgoba, 2012). 즉, 같은 성범죄자라 하더라도 범죄 수법이나, 과거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차원 등에서 그 재범 위험도나 보호관찰 실패 고위험성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먼저 피해자와의 관계 면에서 보면, 성범죄 가해자가 친부인 경우에 일어나는 근친상간(incest)보다 가족 외 관계(extra-family)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더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cCarthy, 2001). 성범죄자가 피해자를 택할 때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가족관계 내의 피해자를 선호하기보다는 가족 이외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택할 때 재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다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Lang, Pugh, & Langevi, 1998; Hanson, Steffy, & Gauthier, 1993).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성추행(child molest)이 일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이나 다른 유형의 성범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ample & Bray, 2006).¹⁾ 이와 같이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성공 여부는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 서로 친족관계 속에서 발생했는지를 검토하여 그 위험성 정도를 추측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동시에 범죄수법 면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를 확인하면서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실패요인은 성범죄자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고유한 인구사회학적 특징 속에서 찾을 수도 있다. 성범죄자 재범 위험 요인을 찾기 위해

1) 한편, 이와 반대로 일부 연구에서는 성범죄자의 재범이 가해자-피해자 관계 차원에서 서로 처음 보는 낯선 사람 사이에서 일어났을 때, 그리고 연령 차원에서 나이가 어린 아동보다는 피해자의 연령이 높은 대상을 선택했을 때, 성범죄자가 다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반대의 연구 결과도 있다(Hanson & Bussiere, 1998).

메타분석을 실시한 선행 연구를 보면, 성범죄자의 연령, 미혼, 과거 전과경력, 성격 장애, 최초 성범죄 시작연령 등이 재범에 가장 큰 영향을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Hanson & Bussiere, 1998). 따라서 성범죄자의 나이가 어리고,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미혼이며, 과거 전과경력이 많다는 점 등은 보호관찰 현장에서도 초기 범죄자 지도·전략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한번쯤 고려해 봐야 할 주요 항목이다.

추가적으로 일부 연구에서는 성범죄자가 갖고 있는 직업 상태에 주목을 하기도 했다(Maletzky, 1993). 무직인 상황에 있거나, 직업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할 때 (employment instability) 성범죄자의 재범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McGrath(1991)의 연구에서 성범죄자의 직장 유무가 재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성패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연령, 혼인관계와 함께 직장 상황에 대한 특징도 반드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1.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 성범죄자와 일반범죄자가 보호관찰 성공 차원에서 각각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 수집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이루어졌고, 2014년 1월 29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기간의 도움을 받아 서울보호관찰소 내 카드보관실에서 데이터 코딩작업이 이루어졌다. 주요 자료 내용은 범죄자의 판결문과 피의자사건기록, 보호관찰카드 등을 중심으로 하였고, 주요 변수는 범죄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특징, 범행수법 특징, 그리고 보호관찰 처분 내용(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처분) 등을 핵심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2013년 한 해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종료한 5대 범죄 가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5대 범죄란 살인, 강도, 절도, 성폭력, 단순폭력을 의미하는데, 보호관찰 대상 전체 범죄자는 총 1,604명에 해당하였다. 이 중 성폭력사범 대상자가 144명에 이르렀고, 나머지 살인, 강도, 절도, 단순폭력사범

이 1,460명에 해당하였다.²⁾

2) 분석방법 및 변수설정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실패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알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교정의 실패 즉, 보호관찰의 성패는 경고장 발송 여부로 재코딩하였다. 범죄자 중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범죄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종속변수를 범주형으로 만든 후,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변수로 활용한 것이다.

독립변수는 성범죄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변인 특징, 범죄수법에서의 특징 변인, 보호관찰 관련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독립변수는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보호관찰 성패 및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을 중심으로 선택하였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한 역시 어찌 보면 또 다른 차원의 재범으로 볼 수 있고, 결국 경고장 발송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나타내는 상징적 결과이기 때문에 종속변수로 경고장 발송을 이분형 결과변수로 활용할 가치가 있고, 독립변수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범행 당시 음주행동,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의 특징(폭력사용 여부), 전과횟수, 보호관찰 처분 요인이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할 요인이라고 하겠다.

결국,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한 가해자 음주행동과 가해자-피해자 친족여부, 낯선 사람 여부, 공범 유무, 폭력사용 여부, 전과횟수는 Tewksbury 등(2012)이 성범죄자의 재범 요인을 찾기 위해 2012년 연구에서 활용한 “가족구성원 여부”, “낯선 피해자 여부”, “흉기사용 여부”, “과거 전과” 등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하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징과 기본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특징, 그리고 다중회귀분석 모델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다중회귀분석 모델은 경고장 발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1)성범죄자 모델과 (2)일반범죄자 모델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2)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등 범죄관련 기록을 코딩을 위해 보조연구원이 직접 서울보호관찰소 자료보관실에 들어가 변수 하나하나를 관련 공식기록에서 찾아가는 작업을 거쳤음을 밝힌다. 연구수집원들의 개인 신원 정보 확인 절차가 있었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서울보호관찰소에 제출한 후 자료 열람을 실시하였다.

2. 분석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범죄자와 일반범죄자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보호관찰 성공 관련 요인이 무엇인지 서로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20년 확대적용과 성충동약물치료, 위치추적 전자감시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교정 전략이 성범죄자 지도·감독 수단으로 등장하였는바, 보호관찰 활동 내에서의 성범죄자 교정 성공 요인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있다. 일반범죄자와 비교하여 성범죄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보호관찰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도 효과적인 지역사회 교정 활동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본 연구에서 성범죄자 144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빈도분석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연령대를 보면 성범죄자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68.8%가 10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19명이고, 30대는 10명, 40대는 7명, 그리고 50대가 6명, 60대가 1명, 70대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관계에서는 전체 성범죄자의 88.9%가 미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혼이 전체의 5.6%에 해당하였고, 결혼이 4.9%, 동거가 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유형을 보면, 무직이 50명으로 전체 성범죄자의 3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68명으로 전체의 47.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및 서비스에 종사하는 성범죄자는 전체의 9.7%에 해당하였고, 단순노무 및 공장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범죄자가 전체의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성범죄자의 약 60%에 해당하는 82명(56.9%)이 고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 학력은 전체의 1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의 낮은 학력은 전체 성범죄자의 27.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과거 보호관찰 경력을 보면, 보호관찰 경험이 있는 자가 전체의 24.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9명에 해당하는 75.7%는 처음 보호관찰을 받는 성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횟수 차원에서는 초범이 44.4%인 것으로 나타났다. 1회, 2회 정도의 전과 경력을 갖고 있는 성범죄자는 전체의 31.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회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는 성범죄자도 전체 대상자의 23.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행동을 보면, 성범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범죄자가 47명으로 전체의 32.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던 성범죄자는 전체의 67.4%에 해당하였다.

가해자-피해자 친족관계를 보면, 전체 144명 중 5명(3.5%)만 가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6.5%는 친족관계가 아닌 비혈족 사이에서 일어난 성범죄라고 하겠다.

가하-피해자 낯선 사람 관계를 보면,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안면 있는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가 전체의 6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타인에 의해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도 전체의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 유무를 보면, 성범죄 당시 공범이 있었던 경우가 전체의 4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 없이 혼자서 단독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전체 성범죄자의 5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사용 여부를 보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44.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성범죄 내에는 강간 외에도 강제추행이나 성매매알선강요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강간 이외의 성범죄 유형이 약 44.4%에 속해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하나의 부가처분으로써 보호관찰 기간 내에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뉘우치게 하고자 무보수로 복지기관이나 병원, 사회봉사단체 등에서 봉사하게 만드는 것이다. 전체 성범죄자 중 보호관찰 기간 내에 봉사명령을 부가 받은 사람은 전체의 34.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5.3%는 성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사회봉사명령 없이 보호관찰 기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명령을 보면, 전체의 63.2%가 보호관찰 기간에 수강명령을 함께 부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사회봉사명령보다는 수강명령이 성범죄자에게 더 많이 부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의 36.8%에 해당하는 성범죄자는 수강명령을 부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범죄자의 인구사회학적 기본 특징

변수	내용	빈도(%)
연령대	10대	99(68.8)
	20대	19(13.2)
	30대	10(6.9)
	40대	7(4.9)
	50대	6(4.2)
	60대	1(0.7)
	70대	2(1.4)
	합계	144(100)
혼인관계	미혼	128(88.9)
	결혼	7(4.9)
	이혼	8(5.6)
	동거	1(0.7)
	합계	144(100)
직장유형	무직	50(34.7)
	학생	68(47.2)
	사무직 및 서비스업	14(9.7)
	노동 및 공장	12(8.3)
	합계	144(100)
학력	중졸 이하	39(27.1)
	고졸	82(56.9)
	대졸	23(16.0)
	합계	144(100)
과거 보호관찰 경력	없음	109(75.7)
	있음	35(24.3)
	합계	144(100)
전과 횟수	초범	64(44.4)
	1회-2회	46(31.9)
	3회 이상	34(23.6)
	합계	144(100)
음주행동	없음	97(67.4)
	있음	47(32.6)
	합계	144(100)

변수	내용	빈도(%)
가해자-피해자 친족 관계	친족 아님	139(96.5)
	친족 해당	5(3.5)
	합계	144(100)
가해자-피해자 낯선 사람	낯선 사람	49(34.0)
	알고 있는 사람	95(66.0)
	합계	144(100)
공범 유무	없음	80(55.6)
	있음	64(44.4)
	합계	144(100)
폭력사용 여부	없음	80(55.6)
	있음	64(44.4)
	합계	144(100)
사회봉사명령	없음	94(65.3)
	있음	50(34.7)
	합계	144(100)
수강명령	없음	53(36.8)
	있음	91/(63.2)
	합계	144(100)
경고장 발송	없음	103(71.5)
	있음	41(28.5)
	합계	144(100)

경고장 발송을 살펴보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서면 경고장을 받은 성범죄자가 41명으로 전체의 28.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71.5%의 성범죄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장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 기간을 지역사회에서 잘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범죄자 집단과 일반범죄자 집단 간의 경고장 발송 차이

성범죄자 집단과 일반범죄자 집단 간의 경고장 발송 차이를 교차분석으로 간략히 살펴본다. 먼저 성범죄자 집단에서는 경고장을 받은 비율이 전체의 28.5%(41명)이고, 보호관찰 종료 시점까지 경고장을 전혀 받지 않은 범죄자 비율이 전체의 71.5%(103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범죄자 집단에서는 경고장을 받은 사람

의 비율이 전체의 37.2%(551)에 해당하고, 경고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전체의 62.8%(929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 동시에 카이스퀘어 분석 결과, 경고장 발송 여부와 성범죄 여부 간의 교차분석 셀 할당 비율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X^2=4.35, p<0.05$).

〈표 5〉 성범죄자 여부와 경고장 발송 차이 교차분석

변수	내용	성범죄자 여부		전체	카이제곱 검정
		성범죄자 집단	일반범죄자 집단		
경고장	빈도	103	929	1,032	$X^2=4.35,$ $p<0.05$
	없음				
	경고장(%)	10.0%	90.0%	100%	
	성범죄자 여부(%)	71.5%	62.8%	63.5%	
	전체(%)	6.3%	57.2%	63.5%	
	있음				
	빈도	41	551	592	
	경고장(%)	6.9%	93.1%	100%	
전체	성범죄자 여부(%)	28.5%	37.2%	36.5%	
	전체(%)	2.5%	33.9%	36.5%	
	빈도	144	1,480	1,624	
	경고장(%)	8.9%	91.1%	100%	
	성범죄자 여부(%)	100%	100%	100%	
	전체(%)	8.9%	91.1%	100%	

3) 보호관찰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3〉의 성범죄자 모델에서 보호관찰 성패, 즉 경고장 발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먼저 성범죄자 모델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카이스퀘어 값이 25.15로 독립변수를 포함한 분석 모델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종속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힘이 약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X^2=25.15, p<0.05, Nagelkerke R^2=0.23$).

연령이나 혼인관계, 직장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범죄관련 재범 고위험 요

3) 또한, 경고장을 받은 전체의 범죄자가 총 592명인데 그 중 성범죄자 비율과 일반범죄자 비율을 비교해 보면, 성범죄자가 전체의 6.9%이고, 일반범죄자가 93.1%로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인, 보호관찰 관련 요인이 독립변수로 모델에 포함되었으나, 분석 결과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오로지 전과횟수 하나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성범죄자의 과거 전과횟수는 양의 방향(+)으로 경고장 발부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볼 수 있다($b=0.19$, $SE=0.08$, $p<0.05$).

반면, 전체 데이터에서 성범죄자가 아닌 일반범죄자를 상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양한 독립변수들이 경고장 발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의 두 번째 모델에 해당하는 일반범죄자 모델을 보면, 종속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독립변수 모델의 설명력이 약 12%에 해당하고, 모델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X^2=129.53$, $p<0.05$, Nagelkerke $R^2=0.12$).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혼인관계와 직장유형이 모두 경고장 발부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변수를 설명하면,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이혼한 범죄자가 미혼 범죄자보다 덜 경고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3.07$, $SE=1.80$, $p<0.05$). 다시 말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미혼 범죄자가 이혼을 경험한 범죄자보다 더 유의미하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추가로 직장 변수를 보면, 일반범죄자 모델에서 다른 모든 변인을 통제했을 때 무직인 경우보다 학생 신분으로 생활하는 범죄자가 덜 경고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0.31$, $SE=0.13$, $p<0.05$). 즉, 일반범죄자의 경우 직장이 없는 범죄자보다 학생 신분으로 학교에 재직 중인 청소년범죄자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더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반범죄자 모델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외에도 범죄 관련 요인과 보호관찰 관련 요인이 모두 경고장 발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관련 요인 내에서는 특히, 가해자-피해자 친족관계와 폭력행동 변수, 전과횟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69$, $SE=0.32$, $p<0.05$). 다른 모든 변수들을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범죄자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면 보호관찰 위반 경고장을 받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든다고 하겠다. 가족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보호관찰 위반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폭력행동 차원에서는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폭력행동을 범행 중에 피해자에게 보인 경우 경고장 발송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사범보다는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가 어찌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더 높은 경고장 발송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추가로 일반범죄자 모델에서 전과횟수도 경고장 발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거 전과횟수가 증가할수록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장을 받을 가능성도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b=1.21, SE=0.08, p<0.01$).

이와 함께, 일반범죄자 모델에서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모두 경고장 발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독립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0.38, SE=0.12, p<0.01, b=0.59, SE=0.15, p<0.01$). 두 변수 모두 경고장 발송과 양의 관계(+)를 갖고 있어 보호관찰 기간 내에 부가 처분을 받게 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경고장을 받을 가능성도 함께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이행으로 인한 추가적으로 부가처분 내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히 준수사항 위반 가능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경고장 발부 가능성도 증가한다고 하겠다. 형사사범 망의 확대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부가처분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에 준수사항 위반 가능성 자체가 달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가처분에도 불구하고, 경고장이 발부되지 않으면서 무사히 보호관찰을 종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호관찰 교정 프로그램이 더 많이 개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표 6〉 성범죄자 및 일반범죄자의 경고장 발송 관련 요인

		성범죄자 모델			일반범죄자 모델			
		b	SE	Exp(B)	b	SE	Exp(B)	
인구 사회 학적 요인	연령	-0.03	0.04	0.98	0.00	0.00	1.00	
	혼인 관계	결혼	-2.19	1.79	0.11	-0.24	0.23	0.78
		이혼	-3.07	1.80	0.05	-0.67	0.28	0.51*
		동거	-21.90	40192	0.00	-19.83	22838	0.00
	직장 유형	학생	0.01	0.48	1.00	-0.31	0.13	0.74*
		사무	0.85	0.92	2.33	-0.38	0.23	0.69
노동		1.09	0.90	2.96	-0.13	0.21	0.88	
범죄 관련	음주행동	-0.28	0.56	0.76	-0.27	0.21	0.76	
	친족관계	-0.72	1.22	0.49	-0.69	0.32	0.50*	

		성범죄자 모델			일반범죄자 모델		
		b	SE	Exp(B)	b	SE	Exp(B)
요인	낮선사람	0.67	0.54	1.96	-0.06	0.15	0.96
	공범유무	-0.12	0.54	0.89	0.22	0.14	1.25
	폭력행동	0.66	0.46	1.94	-0.35	0.14	0.71*
	전과횟수	0.19	0.08	1.21*	0.08	0.01	1.09**
보호	사회봉사명령	1.09	0.51	2.96	0.38	0.12	1.47**
관찰	수감명령	-0.49	0.48	0.61	0.59	0.15	1.80**
		N=144, $X^2=25.15$, $p<0.05$ Nagelkerke $R^2=0.23$			N=1,460, $X^2=129.53$, $p<0.05$ Nagelkerke $R^2=0.12$		

※ * $p<0.05$, ** $p<0.01$

※ 혼인관계 준거변수는 “미혼,” 직장유형 준거변수는 “무직,” 친족관계는 가해자-피해자 ①친족아님, ②친족해당, 낮선 사람은 가해자-피해자 ①낮선 사람, ②알고 있는 사람, 음주행동과 공범유무, 폭력행동, 사회봉사명령, 수감명령 변수는 모두 ①없음, ②있음

I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범죄자 144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실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010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성범죄자의 범죄행동 패턴 및 인구사회학적 특징, 그리고 보호관찰 취소 요인 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김지선, 박지선, 최수형, 2009; 신상화, 김지호,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형이 종료된 성범죄자의 공식 판결문 및 보호관찰기록을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경고장 발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로 분석하였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의 경고장 발송 요인이 일반범죄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일반범죄자 모델과 성범죄자 모델을 각각 구분하여 두 모델을 비교·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범죄자 집단에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경고장 발송 가능성이 과거 전과횟수에 영향을 받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성범죄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혼인관계, 직장유

형)이나 가해자-피해자 관계, 보호관찰 부가처분 등의 관련 변인이 준수사항 위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로지 성범죄자의 전과횟수만 경고장 발송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반범죄자 집단에서는 성범죄자 모델과 달리 혼인상태나 무직 상황, 가해자-피해자 낯선 사람 관계 여부, 폭력행동 여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가처분 여부가 경고장 발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범죄자의 지역사회 교정, 즉 보호관찰의 성공 가능성이 일반범죄자의 성공 가능성과 차이가 있을 것이고, 재범 가능성이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는 통념과 반대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일반범죄자보다 성범죄자가 지역사회에서 더 위험할 수 있고, 보호관찰 위반이 더 많을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경고장 발송 비율이 성범죄자보다 일반범죄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8.5% < 37.2%). 동시에 경고장 발송 유발 요인도 성범죄자보다 일반범죄자 집단에서 더 다양한 요인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쳤는바, 일반범죄자 집단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가해자-피해자 관계, 폭력사용 여부, 보호관찰 부가처분 등이 모두 경고장 발송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관계 변수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성범죄자 집단이 무조건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더 많은 경고장을 발부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유발 요인도 항상 더 복잡하게 많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성범죄자는 외국 선행연구에서의 성범죄자 재범 고위험 요인 결과와 달리, 오로지 “과거 전과횟수”만이 경고장 발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보호관찰 현장에서 전과 경력에 초점을 둔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Hanson과 Bussiere(1998)는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실패요인이 연령, 미혼, 전과경력, 최초 성범죄 시작연령 등에 있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오로지 전과경력 횟수만 경고장 발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추후 연구 및 한국형 모델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본 연구가 “실질적인 새로운 범죄”으로써의 재범이 아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써의 재범만을 측정하여 이에 대한 한계점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를 시작으로 독자적인 한국형 성범죄자의 재범 및 준수사항 위반 예측 모델을 계속 개발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성범죄자 집단에서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통한 위험성 정도 및 경고장 발부 관련 요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기를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오히려 성범죄자 집단보다 일반범죄자 집단의 경고장 발송 관련 요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는 반대의 결과를 얻었다. 성범죄자 집단과 일반범죄자 집단이 경고장 발송 확률 차원에서 그 유발 요인이 뚜렷이 다르고, 성범죄자 집단이 무조건 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고위험 범죄 유형에 속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유사한 다른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사후 보호관찰 지도 방향이나 범죄예방 정책을 좀 더 개별화, 전문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조운오·이미정, 2010).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해 2014년 1월 29일에 서울보호관찰소의 도움으로 성범죄자 144명과 일반범죄자(비성범죄자) 1,460명의 판결문 기록, 수사기록, 그리고 보호관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변수를 코딩하는 절차를 거쳤다. 성범죄에는 강간과 강제추행, 성매매알선강요 등이 포함되었고, 일반범죄자 집단에는 강도, 절도 등의 비성범죄자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했고, 지역사회 교정 성공을 측정하는 종속변수로써 경고장 발송 유무(범주형 변수)를 활용하였다.

다시 한 번 결과를 요약하자면, 성범죄자 집단 모델 내 종속변수 유발 요인이 전과 횡수와 사회봉사명령 두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장 발부라는 종속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모델 설명력은 약 23%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과거 전과횡수와 보호관찰 기간 내 사회봉사명령 이행 관련 두 요인만 성범죄자의 경고장 발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범죄자 모델에서는 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외에 범죄자의 혼인상태, 직장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피해자 친족여부, 폭력사용과 같은 범행 당시의 특징들이 보호관찰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 교정이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수법보다는 과거 전과기록과 보호관찰 처분 내용에 보다 초점을 두어 개별화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추후 성범죄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보호관찰관을 통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향후 “경고장 발송” 이외에 보호관찰 종료 후 최소 5년 정도의 추적 연구를 통한 “동종전과” 및 “이종전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종단연구 차원에서 성범죄자의 지역사회 교정 성공 유발 요인을 분석하는 기회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가 지역사회 교정의 성패를 보여주는 상징적 변수이기는 하나, 새로운 범죄 발생도 보호관찰의 성공여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신상화, 김지호, 2014). 관련 연구들이 계속됨으로써 본 연구 결과가 성범죄자 보호관찰 분야에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낳아주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동제, 조성구, (2012). 스마트 보안장비와 성범죄 GPS 애플리케이션,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3, 27-49.
- 김지선, 박지선, 최수형, (2009).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유형분류와 프로파일링, 보건복지부.
- 김지영, 박지선, 박현호, (2009). 연쇄성폭력범죄자 프로파일링과 프로파일링 제도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 법무연수원(2014). 범죄백서 2013, 법무부 법무연수원.
- 신상화, 김지호, (2014). 범죄 현장 행동 군집에 따른 성범죄 프로파일링 도출을 위한 연구, *경찰학연구*, 131-162.
- 조윤오·이미정(2010). 한국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위반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2), 23-44.

2. 국외문헌

- Bratina, M. P. (2013). Sex offender residency requirements: an effective crime prevention strategy or a false sense of secu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and Science And Management*, 15(3), 200-218.
- Catalano, S.M. (2006). *Criminal victimization, 2005*. Washington, D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 Furby, L., Weinrott, M., & Blackshaw, L. (1989). Sex offender recidivism: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5, 3-30.
- Hanson, R.K., Steffy, R. A., & Gauthier, R. (1993). Long-term recidivism of childmolesters. *Journal of Clinical and Consulting Psychology*, 61, 646-652.
- Hanson, R. K., & Bussière, M. T. (1998). Predicting relapse: A meta-analysis of sexual offender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348-362.
- Lang, R. A., Pugh, G. M., & Langevin, R. (1988). Treatment of incest and pedophilic offenders: A pilot study.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6, 239-255.
- Maletzky, B. M. (1993). Factors associated with success and failure in the behavioral and cognitive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Annals of Sex Research*, 6, 241-258.
- McCarthy, J. (2001). Risk assessment of sexual offenders. *Psychiatry, Psychology & Law*, 8, 56-64.
- Sample, L., & Bray, T. (2006). Are sex offenders different? An examination of rearrest patterns.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7, 83-102.

Tewksbury, R., Jennings, W. G., & Zgoba, K. M. (2012).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sex offender recidivism prior to and following the implement of SORN. *Behavioral Science and the Law*, 30, 308-328.

Zimring, F., Piquero, A., & Jennings, W.G. (2007). Sexual delinquency in Racine: Does early sex offending predict later sex offending in youth and adulthood? *Criminology and Public Policy*, 6, 507-534.

Zimring, F., Jennings, W.G., Piquero, A., & Hays, S. (2009). Investigating the continuity of sex offending: Evidence from the second Philadelphia birth cohort. *Justice Quarterly*, 26, 58-76.

【Abstract】

A Study on the Violation of Probation Condition Determinants between Sex Offenders and Non-Sex Offenders

Cho, Youn-Oh*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crucial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probation warning tickets between sex offenders and non-sex offenders in South Korea. Serious high-profile cases have occurred in recent years which resulted in public and political concerns for successful sex offender management and monitoring strategy through community corrections. The official response has been to initiate a series of legislative probation and parole measures by using GP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hemical castration, and sex offender registry and notification.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the major factors that could affect the failure of probation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sex offenders and non-sex offenders in terms of their major factors which are related to the failure of probation. The failure of probation is measured by the number of warning tickets which would be issued when there is the violation of probation conditions.

The data is obtained from Seoul Probation office from January, 29, 2014 to February, 28, 2014. The sample number of sex offenders is 144 and the number of non-sex offenders is 1,460. The data includes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offenders who completed their probation order after they were assigned to Seoul Probation in 2013. Furthermore, this study uses the chi-square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statistical package program.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only prior criminal histor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that was related to the number of warning tickets in the sex offender group when other variables were controlled($X^2=25.15$, $p<0.05$, Nagelkerke $R^2=0.23$)($b=0.19$, $SE=0.08$, $p<0.05$). By contrast, there were various factors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 Dongguk University-Seoul,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Associate Professor

warning tickets in non-sex offender group. Specifically,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non-sex offenders showed that demographic variable(marital status and employment type), offender-victim relationships, alcohol addiction, violent behavior, prior criminal history, community service order, and attendance orde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 odds of warning tickets.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Key words : probation, warning tickets, sex offenders, non-sex offenders, probation conditions